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위한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의 안 번 호	968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18.9.19.)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상이 2032 하계올림픽대회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음

나. 남북체육분과회담('18.11.2)에서는 남과 북은 2032 하계올림픽대회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함

다. 대한체육회는 2032 하계올림픽대회 국내 유치 도시 선정을 위해 각 시·도에 유치의향서(시의회 회의록 포함)를 제출하도록 요청('18.11.12)하였고, 우리시는 서울시의회로부터 2032년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18.12.20)를 받아 대한체육회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음

라. 대한체육회는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서울시와 부산시에 대해 현장실사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투표 결과, 서울시를 2032 하계올림픽대회 국내 유치도시로 선정('19.2.11) 하였음

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개최계획서(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첨부)를 제출하여 대회 유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회개요(안)

○ 대 회 명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 대회기간 : 2032년 8~9월 중 / 약 17일간(하계올림픽)
※ 패럴림픽 : 하계올림픽 종료 후 12~14일간

○ 장　　소 : 서울특별시, 평양직할시 및 한반도 전역

○ 참가종목 : 33종목(지정종목 28, 이벤트종목 5) ※ 패럴림픽 22종목

○ 참여국가 : IOC회원국 약 200여개 국가

○ 참여인원 : 선수단 약 21,500여명 (올림픽 15,500, 패럴림픽 6,000)

○ 개최주기 : 4년　※ 2024년 파리(프랑스) / 2028년 LA(미국) 개최

3. 유치전략

가. 유치부터 대회 개최까지 서울-평양이 함께하는 통일올림픽 실현

○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서울-평양 동시 개·폐회식 개최

○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한 간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안전한 한반도 실현

나. 경기장 개·보수 등 기존 시설 활용으로 경제올림픽 실현

○ 제100회 전국체전을 위한 경기장 시설 개보수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올림픽 대회에 이용된 경기장 시설을 평생 스포츠의 장으로 활용

○ 서울은 대한민국 광역시도 중 평양과 최단거리에 있는 도시로서, SOC 인프라 구축 비용이나 통신·물류 비용 절감 가능

다.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교통·통신·관광자원 등의 풍부한 인프라 활용

○ 교통, 통신 등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인프라 최대한 활용

○ 서울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올림픽 기간 중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

4.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가. 경제적 타당성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남측 소요 비용은 3조 8,525억원이며, 총 편익은 4조 209억원임

- 편익의 직접편익은[1] 2조 3,466억원, 간접편익은[2] 1조 6,743억원

○ 비용편익 비율(B/C)을 분석한 결과 1.031로 나타나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유치 타당성은 경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정책적 타당성

○ 일반적인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정책적 타당성 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반면,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는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책적 타당성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전문가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책성에 대한 중요도(66%)가 경제성에 대한 중요도(34%)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남

○ 전국 성인 남·여 대상(1,198명) 조사결과,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19.6.17~7.9,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서울지역은 61.2%, 서울외 지역은 61.9%가 찬성하여 평균 61.8% 찬성

○ 외래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11조 8천억원으로 예상됨

- 외래관광객은 최대 780만명까지 증가하여 관광객의 지출로 인해 화장품 매출 5조 2천억원, 식료품 매출 2조 6천억원, 의류매출 1조 5천억원 등 추가 발생 예상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전 세계에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회 · 문화 · 경제 전반의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가브랜드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임. 이러한 기대효과 및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대회 개최를 추진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1) 직접편익은 대회 개최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스폰서십, 입장권판매 비용 등을 포함함

2) 간접편익은 대회 개최를 통한 무형의 사회적 편익으로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기법인 CVM(가상가치평가법) 활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법률 제15812호〕

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 편성 반영 요구

※ 작성자 : 체육정책과 올림픽추진팀 이용길 (☎ 2133-4161)